

#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 02 ) 777-9151-2 / 전송 774-6763

문서번호 주차 30310-491

시행일자 '92. 7.

(경유) (제 1 단)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교통국장	전결	
주차계획담당관	<i>[Handwritten Signature]</i>	
교통시설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법무담당관
기안	이 의 구	1992. 7. 10 교통국장
		협조

제목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계획

1. 한개터 제92-69('92.7.7)호의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시 제339호('85.5.22)로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허가된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한일개발(주) 대표 전창수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일부변경신청이 있어 내용검토한 바, 터미널 기본시설이 아닌 업무시설 등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하고자 합니다.

가. 도시계획사업 변경내역

1) 일부시설 용도변경 : 별첨

※ 연변적 및 터미널시설의 변경은 없음

첨부 : 1. 일부시설 변경내역 1부.

2. 변경 고시문 및 인가증(사본) 1부. 끝.

(제 2 단)

수신 : 한일개발(주) 대표 전창수

제목 :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계획 변경인가

1. 한개터 제92-69('92.7.7)호의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일부변경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인가 하오너 부과된 조건을 조기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검부 : 도시계획사업변경 고시문 및 인가증 1부

(제 3 안)

수신 : 성동구청장

참조 :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제목 :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시고시 제339호(85.5.22)로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허가된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터미널)실시계획인가 하였고, 홍보하니 관련업무 추진에 착오없기 바람.

첨부 : 고시문 및 인가증 사본 1부. 끝.

##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신 : 홍보계획담당관

제목 : 시보게재 의뢰

1.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명 :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변경인가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주 차 계 획 담 당 관

27.10 234  
한  
이  
정

1992-232



서울특별시 고시 제

○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변경안기

1. 서울시고시 제339호(85.5.22)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시행 허가되고 성동구공고 제78호(91.5.10)호로 사업완료된 동서울 시외버스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고 동법 제26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과 성동구청 지역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1992. 7.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처 :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다. 일부시설 용도변경 사항 : 별첨.
- 라. 사업시행처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마. 사업의착수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92. 7. 20

준공예정일 : 92. 12. 31

바. 우물 및 상하수관 등지하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사. 관계도서 : 생략

